

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. 6. 24 선고 2021가단208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

담당변호사 백승복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수길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5. 27.

판 결 선 고 2021. 6. 24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1. 2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와 2018. 6. 29. 16,000,000원을 변제기 2020. 6. 28., 이자율 연 9.58%(지연손해금율 연 12.58%)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, C는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이에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7253호로 지급명령사건을 신청하여 위 사건에서 대여금 18,500,564원과 그중 16,000,000원에 대하여 2020. 8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.58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C는 2019. 11. 21.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53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5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2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오산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,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(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).

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,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

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조상과 일가 종친들의 분묘가 대대로 모셔진 종산으로서 C의 부친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그 명의만 C에게 신탁되어 있던 재산으로서,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혜주

부동산의 표시

1. 충청남도 공주시 임야 102050㎡